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34 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 위성곤 • 박지원 • 이기헌

주철현 · 진성준 · 허 영

서영교 • 이춘석 • 강유정

문대림 · 김한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 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 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.

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을 진료한 의사 등에 대 하여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 하거나 검사하는 경우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	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	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	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,	3			
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				
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	
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				
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				
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				
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ㆍ	,,			
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				
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				
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				
아니하다.	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8의2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			
	<u> 상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수</u>			
	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			
	여를 받는 어선원등을 진료한			
	의사 등에 대하여 그 어선원			
	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			
	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			
	<u>검사하는 경우</u>			
9. ~ 19. (생 략)	9. ~ 19. (현행과 같음)			

④・⑤ (생 략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